



## 교육감 규정

번호: A-740

제목: 임신, 양육 중인 학생 및 성보건 프라이버시

항목: 학생

발행: 2020년 1월 30일

###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2008년 11월 13일자 교육감 규정 A-740을 대체합니다.

#### 변경내용:

- 임신과 관련된 차별, 괴롭힘, 위협 및/또는 따돌림으로부터 자유로울 학생의 권리 및 이러한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섹션 II.D)
- 본 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학교장의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섹션 III.A.1 및 섹션 III.A.3)
- 임신 및 양육 중인 학생들에게 과제, 수업내용 및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섹션 III.A.2)
- 학생, 학부모 및 보호자가 수유 공간에 접근하는 것과 관련된 DOE의 정책을 명확히 하였다. (섹션 III.A.5)
- 임신 또는 양육 중인 학생이 가정에서 수업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자격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섹션 III.C.1)
- Living for the Young Family through Education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프로그램에 관하여 설명할 학교의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섹션 III.C.2 및 섹션 IV.D)
- 의료 및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임신 및 양육 중인 학생에게 지원을 제공할 교직원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섹션 V.F)
- 문의처 연락 정보를 갱신하였다. (섹션 VI).

## 요약

본 규정은 2008년 11월 13일자 규정 A-740을 대체합니다.

의무 교육 대상 연령의 임신한 학생은 달리 의료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규정의 목적은 본 규정을 시행하는 학교 담당자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학생의 임신 기간 중 및 이후에 책임을 담당할 학교 교직원 지정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I. 개요

DOE는 임신 및 양육 중인 학생들이 관련 법규 및 DOE 규정에 맞게 계속해서 학교에 다니고 교육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II. 임신 및 양육 중인 학생의 권리

- A. 의무 교육 대상 연령인 임신 및 양육 중인 학생은 학교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임신 및/또는 자녀 양육 중에도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남아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받고 교육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B. 임신 또는 자녀 양육 중인 학생은, 임신부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수업이나 과외 활동에 참여를 위한 특정 의료허가서 제출을 요구받지 아니하고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 전적으로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C. 의료적 이유로 쉬어야 할 경우, 휴가가 종료되면 학생은 자신의 학적부가 있는 학교로 돌아가야 하며, 즉시 학생 신분을 회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반드시 적절한 학업 및 가이드스 지원을 마련하여 학생이 정규 학교 프로그램에 복귀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 D. 학생들은 교육감 규정 A-830과 A-832 a 및 연방, 주, 로컬법에 따라 임신에 근거한 차별, 괴롭힘, 위협 및/또는 따돌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차별, 괴롭힘, 위협 및/또는 따돌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학교장 또는 학교장 대리인 또는 기타 아무 교직원에게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교육감 규정 A-830 및/또는 A-832에 근거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임신을 이유로 DOE 직원으로부터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학생 역시 동등 기회 및 다양성 관리 담당실(OEO)에 온라인 <https://www.nycenet.edu/oeo>으로 신고 양식을 접수하거나, 전화 (718) 935-3320 번 또는 팩스 (718) 935-2531 번으로 신고하거나, 65 Court Street, Brooklyn, NY 11201 로 신고서를 우송할 수 있습니다.

**III. 학교장 및 교직원의 의무****A. 학교장의 의무**

1. 교직원들이 본 규정에 명시된 임신 및 양육 중인 학생들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있도록, 각 중고등학교 학교장이나 대리인은 매 학년도 시작 무렵 모든 교직원과 본 규정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2. 각 학교는 반드시 임신 및 양육 중인 학생들이 임신이나 양육 문제로 결석하게 될 경우, 수업 진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과제, 수업내용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3. 학생이 임신했거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섹션 V 에 명시된 프라이버시 요건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에게 본 규정, 임신 관련 보건, 자녀 양육 및/또는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장은 카운슬러나 보건교육 교사, 또는 기타 적절한 훈련을 받은 개인을 지명하여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이나 지명된 교직원은 해당 학생들에게 그들의 교육적 권리와 의무를 고지하고, 이 학생들이 임신 및 자녀양육 중에도 적절한 학업 및 가이던스 지원 서비스를 받아 교육을 지속하고 교육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명된 교직원은 학교장의 감독 하에 본 직무를 수행하며, 해당 학생들에게 각종 관련 서비스가 잘 제공되도록 조율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만약 임신한 학생이 학생의 정규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의료적 사유가 발생한다면, 학생 본인이나 학생의 부모는 학교에 의료전문가가 발행한 적절한 소견서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장이나 지명인은 의료전문가의 소견에 맞게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계획을 작성할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학생의 건강을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면 각 과목 교사들에게도 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제공된 경우, 학교에서는 건강문제가 있는 기타 다른 모든 학생들에게 하는 것과 같은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5. 학생이나, 학부모, 보호자, 또는 학생과 부모 또는 보호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교내에서 모유를 유축할 수 있는 수유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한 경우, 학교장이나 지명인은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타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유 공간은 위생적이고, 화장실에서는 아니 되며, 외부에 노출되거나 침입을 받지 않는 공간으로서 전기 콘센트가 있고, 펌프 및 기타 개인물품을 올려놓을 평평한 표면, 그리고 의자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까운 곳에 수도물이 있고, 모유를 보관할 냉장고나 기타 적절한 대체 보관함이 있어야 합니다. 모유를 유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학생은 이러한 목적으로 수업 중 나가거나 빠질 수 있으나, 본 규정 III.A.2 에 의거한 과제, 수업 내용 및 추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B. 출석 절차

의료적 사유로 결석하게 될 경우, 정규 출석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의료적 사유로 인한 결석 처리 기준 및 절차, 문서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 규정 A-210 를 참고하십시오.

## C. 가정 학습 지도

1. 학생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학교는 임신이나 양육 중인 학생의 교육적 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학생 본인이나 학생 자녀의 의료적 상태에 따라 가정 학습지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은 교육감 규정 A-170 에 의거하여 가정 학습 지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학생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학교가 학생의 복귀의사를 통지 받으면, 학교 담당자는 반드시 학생이 즉시 복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교는 반드시 학생을 즉시 받아줘야 합니다. 의료적으로 복학할 수 있는 상태의 학생을 학교에서 거부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없어야 합니다. 원활한 복학을 위해 학교에서는 학생, 학생의 부모 및 적절한 교직원이 만나 학교에서 제공 가능한 적절한 가이던스, 학습지도 및 지원 서비스를 논의하고 학생의 복학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 중인 학생의 복학과 함께, 학교에서는 아래 섹션 IV 에 명시된 Living for the Young Family through Education (LYFE)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IV. 임신 및 양육 중인 학생이 선택 가능한 옵션

- A. 임신 및 양육 중인 학생은 자신의 현재 학교에 남아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원할 경우, 학교장 또는 대리인은 학생 및/또는 학생의 부모/보호자를 도와 이 학생이 졸업요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DOE 교육 옵션을 찾아볼 책임이 있습니다.
- B. 자신의 현재 학교에 머물기를 원치 않는 임신한 학생은 본인의 다른 존스쿨 정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 전학 갈 수 있습니다. 학교장, 적절한 교직원, 학생 및/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는 학생등록 담당실(OSE)와 협력하여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C. 통학이 과도한 학교에 다니는 임신 또는 양육 중인 학생은 통학상 어려움에 의한 전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적절한 교직원, 학생 및/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는 OSE 와 협력하여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D. LYFE 프로그램은 생후 6 주에서 만 3 세인 학생의 자녀를 대상으로 고품질의 조기 아동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DOE 학교 중 몇몇 학교는 LYFE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자녀 양육 중인 학생에게 보육시설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직접 LYFE 프로그램과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LYFE 프로그램 연락처는 본 규정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 E. 또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대안 과정 추천 센터(Referral Center for High School Alternatives)에서 정보를 얻고 가이드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안 과정 추천센터에는 이러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들과 카운슬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보로 별 추천 센터 연락처는 본 문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 V. 성 보건 문제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 A. 학교장, 교감 및 행정자들은 학생의 임신, 성생활, HIV/AIDS 및 성병 관련 정보의 고도로 민감한 속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교직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전문가다운 태도를 갖고 임해야 합니다.
- B. 학교장, 교감 및 교직원들은 그 어떤 학생에게도 임신, 성병, 또는 HIV/AIDS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 C. 학교장, 교감 및 교직원들은 그 어떤 학생 또는 학생이 다니는 병원에 임신, 성병, 또는 HIV/AIDS 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학생이나 학생의 의료담당자들도 학생의 임신, HIV/AIDS, 성병 또는 성생활과 관련된 상태를 공개하도록 요구 받을 수 없습니다.
- D. 학교장, 교감 및 교직원들은 그 어떤 학생도, 임신, 성병, 또는 HIV/AIDS 검사를 받지 않았다거나, 이러한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은 임신 상태거나 HIV 양성이거나 자녀가 있다거나 STD 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생활에서 배제하거나 학교 프로그램 참석을 불허해서는 안됩니다. 학교장, 교감 및 교직원들은 학생에게 이런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학생의 출석이나 어떤 프로그램 참여를 허락할 수 없습니다.
- E. DOE 는 학부모 참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학교장이나 대리인은 임신 중이거나 양육 중인 학생을 도와 학생의 가족이 교육 계획 및 각종 옵션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학생이 본인의 부모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해 안전이나 기타 우려를 표명할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개별 사안 및 학생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F. 그러나 이것이 교직원이 적절한 의료 및 지원 서비스를 구하는 학생을 지원하거나, 이러한 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을 배제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임신 및 양육 중인 학생을 지도하는 모든 교직원은 반드시 이러한 학생 본인 및 자녀(들)의 의료 서비스에 관한 권리를 명시한 연방 및 주 관련법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VI. 문의

임신 및 양육 중인 학생들의 권리에 관한 질문은 다음 연락처로 하십시오: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동등 기회 담당실(Office of Equal Opportunity)

65 Court Street

Brooklyn, NY 11201

전화: 718-935-4987

[Title\\_IX\\_Inquiries@schools.nyc.gov](mailto:Title_IX_Inquiries@schools.nyc.gov)

본 규정에서 다른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의는 다음 주소로 하십시오:

Office of Legal Services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 Room 308

New York, NY 10007

전화: 212-374-6888

[asklegal@schools.nyc.gov](mailto:asklegal@schools.nyc.gov)

자녀 양육, 보건 및 카운셀링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다음 주소로 하십시오:

LYFE Program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00 Eighth Avenue, Suite 709

New York, New York 10018

전화: 212-609-8520

[lyfe@schools.nyc.gov](mailto:lyfe@schools.nyc.gov)

임신 및 양육 중인 학생들을 위한 가이드스 관련 정보 문의는 추천센터(Referral Center)로 하십시오:

Bronx Referral Center

1010 Rev. James Polite Avenue, Room 436

Bronx, NY 10459

전화: 718-518-4530

Central Brooklyn Referral Center  
Boys and Girls High School  
1700 Fulton St. 3rd Floor, Room 383  
Brooklyn, NY 11213  
전화: 718-804-6750 내선. 3831

Downtown Brooklyn Referral Center  
69 Schermerhorn Street  
Brooklyn, NY 11201  
전화: 718-935-9457

Midtown Manhattan Referral Center  
269 West 35th Street, 11th Floor  
New York, NY 10018  
전화: 212-244-1274

Queens Referral Center  
162-02 Hillside Avenue  
Queens, NY 11432  
전화: 718-739-2100

Staten Island Referral Center  
450 St. Marks Place  
Staten Island, NY 10301  
전화: 718-273-3225